

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안 번호	2051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24. 7. 22.

제 출 자 : 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청년수산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.

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의 제목“(후계수산업경영인의 육성)”을“(후계수산업경영인과 청년수산인의 육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후계수산업경영인”을 “후계수산업경영인과 청년수산인”으로, “수립하고”를 “수립하여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(<u>후계수산업경영인의 육성</u>) 해양수산부장관은 미래의 수산 업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<u>후계수산업경영인</u> 의 육 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<u>수 립하고</u> 시행하여야 한다.	제16조(<u>후계수산업경영인과 청년 수산인의 육성</u>) ----- ----- ---- <u>후계수산업경영인과 청년 수산인</u> ----- <u>수 립하여</u> -----.